군민과 소통하는 다시 뛰는 의회

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정례회

제2차 본회의(2022.12.09.)

조 <mark>례 안</mark> 사 보 고 서



산업건설위원회

목 차

	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
	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3	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조례안7
4	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

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2. 11. 25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2. 11. 29.

다. 상정일자: 제267회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

(12.10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산림과장)

O 힐링랜드 시설사용료의 기준과 감경기준을 추가하고, 예약제 외 시설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힐링랜드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 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힐링랜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- O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근거 신설(안 제3조의3)
- 주차장 사용료 및 감경기준 신설(안 제5조제3항, 별표 2, 별표 3)
 - 사용료 신설: 경차, 1,000CC 차량
 - · 30분 기준 250원(10분 초과당 100원 추가)
 - · 1일 2,500원
 - 50퍼센트 감경: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 표지를 붙인 차량

- O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의 사용료 추가징수 기준 신설(안 별표 2)
 - 최대수용 인원 초과 1명당 1만원
 - 추가 가능 인원 1실당 2명
 - 별표 3에 따른 감면율 적용 제외

4. 참고사항

O 관계법령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5

O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O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O 입법예고

- 예고기간: 2022. 11. 03. ~ 11. 23.

- 예고결과: 의견없음

O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○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- 본 조례안은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법률」 및 「대기환경보전법」 등에서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
- 예약제외 시설물의 규정 근거 마련, 경차 이용자 주차장 이용료 및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감경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
- 고도하게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등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힐링랜드 내 시설물을 보다 공정하게 운영 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며
- O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- 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- 7. 토론요지 : 없음
- 8. 수정안 요지 : 없음
- 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- 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-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-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/발의자 : 2022. 11. 29. / 박수자의원 대표발의

나. 회부일자 : 2022. 11. 29.

다. 상정일자: 제267회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

(12.10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박수자의원)

O 황강취수장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범군민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-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제4조)
- O 위원의 해촉, 제적,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(안 제5조·제6조)
- O 위원장의 직무, 회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·제8조)
- O 위원회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 -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

4. 참고사항

- O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
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8조, 제79조, 제80조
- O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O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O 입법예고
 - 예고기간: 2022. 11. 00. ~ 12. 00.
 -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O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- O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- 본 조례안은 황강취수장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범군민 차원에서 대 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
- O 범군민 차원으로 대책위원회 추진을 위해 10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계 각층의 전문가과 군민들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군민의 뜻을 대변하여 한목소리로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
- O 대책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군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
- O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- 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- 7. 토론요지 : 없음
- 8. 수정안 요지 : 없음
- 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- 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_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_ _ 탄소중립 ·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_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2. 11. 25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2. 11. 29.

다. 상정일자: 제267회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

(12.10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환경과장)

- O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
- O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추진 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- O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함(안 제1조)
- O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을 정함(안 제2조)
- O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정함(안 제3조)
-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을 정함(안 제4조~제12조)
 - 기능, 구성, 임기, 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, 회의 등

- 거창군 환경위원회의 기능을 대행(안 부칙 제2조)
- O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정함(안 제13조)
- O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사업 및 지원을 정함(안 제14조)
- O 탄소중립 등을 위한 생산·소비문화의 확산을 정함(안 제15조)
- O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·홍보 등을 정함(안 제16조)
- O 「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」 폐지(안 부칙 제3조)

4. 참고사항

- O 관계법령
 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제12조·제2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 - 「지방자치법」제28조, 「지방재정법」제17조
- O 예산조치 : 1억원 확보 예정
- O 입법예고
 - 예고기간 : 2022. 10. 27. ~ 11. 17.
 -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O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O 비용추계서: 1억원(용역비, 5년단위 계획 수립), 국비(70):군비(30)

- 본 조례안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정에 따라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및 탄소중립 시군구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
- O 탄소중립 2050실현을 위해 전세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을 하기 위한 첫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임

- 중앙 계획에 따라 광역 계획 그리고 자치단체 계획 순으로 체계를 갖출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, 기본 계획에는 탄수중립비전 온실가스 감축 목표,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·흡수 현황 및 전망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작성하여 공포하여야 할 것임
- O 아울러 탄소 중립 기본계획 수립의 중심에 있을 탄소 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는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을 떠나 보나 내실있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관 주도보다는 민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며.
- O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여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단 1%의 확률을 가진 문제라도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임
- O 청정 거창의 이미지를 말로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자랑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탄소 중립을 보다 주도적으로 나가야 할것으로 판단됨
- O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- 7. 토론요지 : 없음
- 8. 수정안 요지 : 없음
- 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- 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**11.**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- 거창군 하수도 시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-- 심 사 보 고 서 -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2. 11. 25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2. 11. 29.

다. 상정일자: 제267회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

(12.10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환경과장)

-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·확충사업으로 인한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로 분뇨 수거물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
- 경영악화가 심화된 분뇨수집·운반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현실화율에 가깝게 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

- O 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인상(안 별표 6)
 - 수거식 화장실

부과기준	수수료			증가율
一 十47世 	수집·운반	처리	계	증기원
10리터	185원 174원	15원	200원 189원	6.3% (11원증가)

- 개인하수처리시설

구 분	수수료			7.36
	수집·운반	처리	계	증가율
기본요금	20,080원	1,125원	21,205원	17.4%
(750리터까지)	17,100 원		18,225원	(2,980원)
초과요금	1,350원	150원	1,500원	17.4%
(100리터마다)	1,150원		1,300원	(200원)

4. 참고사항

O 관계법령: 「하수도법」제41조제4항, 제47조

○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O 입법예고

- 예고기간 : 2022. 10. 20. ~ 11. 09.

-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O 공공하수처리 시설 정비 확충으로 인한 수거 물량 감소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수익성 저하가 지속되어 경영악화가 심화된 업체 경 영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
- O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서도 현실화율에 가깝게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나왔음.
- 현실화율에 맞게 수수료를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저항감을 줄 것이라고 판단됨
- O 입법예고 기간에는 다른 의견이 도출되지 않았으나, 조례 개정 이후 수수료 인상을 체감하게 되면 군민 불만이 나타날 것임

- 인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사전에 적절한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, 수수료가 인상되는 만큼 분뇨 수집·운반 업체가 본연의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업체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
- O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- 7. 토론요지 : 없음
- 8. 수정안 요지 : 없음
- 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- 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